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90024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9.01.09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5.05.07.

kumakitchen.co.kr



정 보 공 개 서

(주)에이치투엠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 . . .



(주)에이치투엠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가맹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두물로11번길 40-26, 505호(별내동)

전화번호 : 1661 - 9084

대표팩스번호 : 031) 574-3755

가맹사업 전화번호 : 1661 - 9084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별지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한국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에이치 투엠	쿠마키친 (KUMA KITCHEN)	경기도 남양주시 두물로11번길 40-26, 505호(별내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8.05.29	2018.06.27	윤영훈	1661 - 9084	031) 574-3755
	법인등록번호	284111-0191258	사업자등록번호	162-87-01161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주)에이치 투엠/윤영훈	쿠마키친 (KUMA KITCHEN)	경기도 남양주시 두물로11번길 40-26, 505호(별내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윤영훈	1661 - 9084	031) 574-3755
사내이사	(주)에이치 투엠/권회근	쿠마키친 (KUMA KITCHEN)	경기도 남양주시 두물로11번길 40-26, 505호(별내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윤영훈	1661 - 9084	031) 574-3755
감사	(주)에이치 투엠/류규형	쿠마키친 (KUMA KITCHEN)	경기도 남양주시 두물로11번길 40-26, 505호(별내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윤영훈	1661 - 9084	031) 574-3755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해당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쿠마키친이라 합니다)의 내용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쿠마키친 (KUMA KITCHEN)	일본어 쿠마("こま")는 곶을 뜻하며 고객에게 정성을 담아 우직하고 끈기 있게 노력하는 일본식 Katsu & Hambak 전문점입니다.
상 호	쿠마키친 000점	-
상표(서비스표)		출원번호(영문) 40-2018-0137521 (30류) 40-2018-0137525 (43류)

		출원번호(한글) 40-2018-1037518 (30류) 40-2018-0137531 (43류)
광 고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4년	1,031,043	977,007	54,035	3,562,493	35,209	10,495
2023년	996,272	952,733	43,539	3,165,297	25,303	10,344
2022년	776,353	743,158	33,195	2,464,179	11,950	12,782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윤영훈	대표이사	2018.5.~ 현재	(주)에이치투엠 대표	회사 업무 총괄
	권회근	이사	2018.5.~ 현재	(주)에이치투엠 이사	운영관리
	류규형	감사	2018.5.~ 현재	(주)에이치투엠 감사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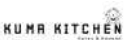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1	2	6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해당 없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	-	-	-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점운영권 범위 내 사용	2018.10.08. 출원 2019.09.17. 등록	출원번호 4020180137531 등록번호 4015217920000	(주)에이치투엠	2029.09.17
			출원번호 4020180137525 등록번호 4015217910000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적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쿠마키친 가맹사업 현황

1. 쿠마키친을 시작한 날 : 2019년 1월 10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18년 6월 27일)

2. 쿠마키친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에이치투엠	쿠마키친	윤영훈	2019.1.10. ~2021.08.18	경기도 남양주시 두물로 27번길 23, 1층
(주)에이치투엠	쿠마키친	윤영훈	2021.08.18.~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두물로11번길 40-26, 505호(별내동)

3. 쿠마키친 업종

영업표지	업종	
쿠마키친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일식	돈카츠,나베,함박스테이크,우동, 소바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쿠마키친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5	14	1	18	17	1	20	19	1
서울	4	4	-	4	4	-	4	4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2	2	-	1	1	-	1	1	-
대전	1	1	-	1	1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2	2	1	6	5	1	7	6	1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1	1	-	1	1	-	1	1	-
경남	4	4	-	5	5	-	7	7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쿠마키친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4	17	3	-	1	-	19
2023	14	5	-	2	-	17
2022	14	2	-	2	-	14

6. 쿠마키친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해당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년말 가맹점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19	285,070	14,873	650,861	68,335	126,158	6,605	17곳 산정
서울	4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6	294,173	21,832	623,091	68,335	165,810	9,424	6곳 산정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경남	7	265,112	11,650	296,408	54,065	240,011	6,605	5곳 산정
제주	-	-	-	-	-	-	-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영업 개월 수가 6개월~12개월 미만 가맹점은 12개월 매출로 환산하였으나, 영업 개월 수 6개월 미만 가맹점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가맹점 연평균 매출액에 제외하였습니다.

8. [쿠마키친]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쿠마키친]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년도	19개	1079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경기도 GYEONGGI-DO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구분	수단	기간	지출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비공개)	42,310	 (비공개)	-
광고		(비공개)	42,310	 (비공개)	-
판촉	-	-	-	-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국민은행 별내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5로 5번길 3,2층	031)572-5313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가맹 계약 체결일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 각 지역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예치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방법은 은행방문 예치 경우 “가맹금예치금 예치신청서” 작성 후 입금 진행 하면 되며, 인터넷 뱅킹(모바일 뱅킹 제한)의 경우 공인인증서 개인 로그인→기업→기업서비스→가맹금예치제도→가맹사업자→가맹금예치금 예치→가맹본부 사업자번호 입력/(주)에이치투엠→ 예치금 예치 하시면 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 서식의 예치신청서를 별지에 첨부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와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비 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보험계약자	(주)에이치투엠	가맹본사
피보험인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발급일부터 2개월 또는 개점일 중 빠른 날	
보험금액	예치가맹금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IV.1.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참조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조사 → 지급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쿠마키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와 관련된 비용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 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현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보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총 계	8,800	-	-	-	-
가맹비	5,500	계약 체결일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가맹금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액 반환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
최초교육비	3,300	계약 체결일			-

2) 계약이행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 고
총 계	5,000	-	-	-
계약이행보증금	5,000	계약 체결일	금전지급의무위반, 계약기간 중에 해지되는 경우, 손해배상 등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 액(단위: 천원)
합 계	13,800
가맹비	5,500 (부가세 포함)
최초교육비	3,300 (부가세 포함)
계약이행보증금	5,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 ²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 계	-	85,030	4,251			실평수 66.1m ² (20평형)
인테리어공사	별지 참조	40,700	2,035	상세 설계전 계약취소	공사 전 계약취소	유동적
가구(의,탁자)		5,280	-			유동적, 배송비 별도
간판 싸인물		15,400	-			전면 6.4m ² 기준, 돌출 1개, 실사필름 등 (유동적)
주방기기		12,100	-			신품/중고 유동적 구입가능,
주방 및 홀 집기		9,350	-	물품 공급 7일 이내	발주 전 계약취소	유동적
포스장비		구매/임대 (별도)	-			
메뉴판 및 초도물품		2,200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등을 진행할 경우 검수비(정보제공과 검수에 대한 비용)로 수도권의 경우 3.3m² 당 기준으로 330천원(부가세 포함)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지역에 따라 지방 경비를 공사완료 1일전까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교육, 소방공사 및 완비, 전기증설, 냉난방, 전산장비(POS), 화장실, 철거공사, 가스공사, 외부덕트, 외부공사 등 위 표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별도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백화점, 아울렛, 쇼핑몰, 공항, 터미널, 전철역, 대학, 휴게소, 테마파크 등의 특수상권 입점 매장의 경우 특수상권 임대인의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 원하는 지역 파악 → 지역 선정 → 가맹희망자 직접조사 또는 가맹희망자가 전문 업체에 의뢰 → 가맹본사와 가맹희망자 동의 시 확정

당사는 점포 선정과정에서 귀하에게 조언을 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른 추가 발생비용은 위하가 부담합니다.

가맹점희망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쿠마키친 가맹점의 입지를 조사, 선정하며 가맹본부가 조언한 경우라도 이는 우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며, 최종 결정은 가맹점 희망자가 하고 가맹본부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 합니다.

가맹희망자는 본인의 책임과 권한으로 가맹점 입지(제 3자와 체결한 점포, 장비, 동산의 매매 및 임대차 계약)를 정하였으므로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직원에게 가맹점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2인 1조의 가맹점운영자 인원기준을 충족할 것 당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실이 없을 경우 2인이 교육 정족수임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파산, 개인회생 등을 신청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된 자가 아닐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쿠마키친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8) 한편, 귀하는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및 판촉 분
 담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호 협의 하 진행시 발생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월 440	익월 10일	미반환	사용된 비용	
광고비 분담금	가맹본부 및 협력업체 (미정)	상호협의	상호협의	광고 전	광고 후	진행시 상호 협의 하 분담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및 협력업체 (미정)	상호협의	상호협의	판촉 전	판촉 후	진행시 상호 협의 하 분담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정해진 금전 지급 의무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직전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
 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품 및 재고관리 등을 점검하고 가맹본부에 정한 규정 외 서비스 취급여부, 서비스 상태,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가 가맹점의 위생, 상품공급 상태, 각종 설비관리, 원부자재 관리 등이나 기타 점포의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영업시간 중에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당사에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 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

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쿠마키친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도인의 잔여 계약기간은 양수인의 계약 기간입니다. 또한 당사로부터 승인받은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인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 양수인이 신규 가맹계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오픈에 따른 지원 업무의 일부가 경감되었기에 가맹비를 20% 감면한 금액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가맹사업자의 비용으로 이를 철거 내지 제거(홈페이지, 블로그, 지역정보 등 인터넷상의 사용도 포함)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교부한 영업 관련 자산 및 자료를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 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 자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 위 내 (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쿠마키친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별지2 참조

귀하가 영업에 필요한 물품 및 상품을 쿠마키친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쿠마키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

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2)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부분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4 참조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경쟁 및 제3의 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거래상대방에게 판매 불가	1회 위반 : 서면 지정요구 2회 위반 : 서면 지정요구 2회 지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정되지 않는 경우, 2회차 지정 요구한 날로부터 2개월 후에 계약해지	
다른 가맹점 사업자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

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4 참고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영업지역 제도 유무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여부

당사는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동일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일본식 돈카츠, 함박스테이크, 우동을 주메뉴로 하는 돈카츠전문점	쿠마키친	-

당사는 가맹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당해 브랜드와 상기 기재된 범위와 같은 동일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동일 업종의 범위 및 동일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의 영업표지는 상기와 같습니다.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 방법
특수상권일 경우	특수상권 내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점포를 중심으로 도상거리 500m	

※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지하상가, 대학, 기차역, 전철역, 터미널, 공항, 경기장, 테마파크, 휴게소, 호텔, 종합병원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을 의미하며, 특수상권을 영업지역으로 설정한 경우 해당 건물만 영업지역이 됩니다.

3) 영업지역을 재조정(변경)하는 경우의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6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쿠마키친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가맹점	-	-	-
대리점	-	-	-
일반소매점	-	-	-
기타	-	-	-

▶ 당사는 [쿠마키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	-	-	-
	-	-	-	-
홈쇼핑	-	-	-	-
전화권유판매	-	-	-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90	10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영업표지의 전체 상품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수의 비중 및 온라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

(단위: %)

연도	가맹점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쿠마키친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0조 3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40조 3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40조 3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40조 3항
○ 쿠마키친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40조 3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40조 3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서상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41조 1항
○ 가맹계약서 제8조 (가맹점의 표시)를 위반한 경우	41조 1항
○ 가맹계약서 제15조 (입지 및 영업지역의 보호)를 위반한 경우	41조 1항
○ 가맹계약서 제20조 (인테리어 및 설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41조 1항
○ 가맹계약서 제21조 (교육·훈련)을 위반한 경우	41조 1항
○ 가맹계약서 제24조 (영업의 표준화와 판매가격)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1조 1항
○ 가맹계약서 제25조 (운영매뉴얼 준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1조 1항
○ 가맹계약서 제26조 (영업일 규정)을 위반한 경우	41조 1항
○ 가맹계약서 제27조 (복장 규정)을 위반한 경우	41조 1항
○ 가맹계약서 제28조 (물품 등의 주문 및 관리)를 위반한 경우	41조 1항
○ 가맹계약서 제33조 (광고 및 판촉) 규정을 위반한 경우	41조 1항
○ 가맹계약서 제34조 (보고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41조 1항
○ 가맹계약서 제35조 (영업비밀유지의무 및 경업금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41조 1항
○ 가맹계약서 제00조 해충방제 및 위생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41조 1항
○ 가맹계약서 제36조 (감독 및 시정요구) 규정을 위반한 경우	41조 1항
○ 가맹계약서 제38조 (영업의 양도) 규정을 위반한 경우	41조 1항
○ 가맹계약서 제41조 기타 가맹계약서에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1조 1항
○ 가맹계약서 제41조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본부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1조 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41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41조 2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1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41조 2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1조 2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41조 2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41조 2항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41조 2항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41조 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의 서면 합의를 거쳐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와 관련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 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25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당사 (1661 - 9084)

단, 양도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귀하에게 통지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는 양도에 대한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개설과 관련된 제반 비용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은 위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의 3.계약종료후의 부담의 3)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에 비용을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인은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와 양수 전 계약한 영업지역 내에서 본 계약과 동종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거나 위탁할 경우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1개월 전에 통보하고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 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 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양도 절차와 동일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과 계약 종료 후 1년간 동일한 영업지역에서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인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일본식 돈카츠, 함박스테이크, 우동을 주메뉴로 하는 돈카츠전문점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당사 (1611 - 9084)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쿠마키친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휴무 일수	비 고
11:00 ~ 22:00 (11시간)	주 1회. 가맹사업자 자율 선택	문의: 당사 (1661 - 908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만약, 7일 이상 영업 중단될 경우 당사와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점검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공지됩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맹점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서 및 영업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위생, 재고관리, 회계처리, 고정설비관리, 원·부재료 관리, 고객관리, 메뉴관리 등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당사 또는 당사에서 지정하는 자가 상기 사항 점검이나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영업시간 중에 자신의 가맹점에 방문하는 것을 허락 하여야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쿠마키친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하여 필요시 광고 및 판촉 활동이 필요할 경우 진행하며 진행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 고
		본 사	가맹점		
광 고	브랜드 홍보 상품광고	광고비 50%	광고비 50%	상호 협의 후 광고비 부담 → 광고비 지출 내역 공개 (가맹본부 부담금 포함)	매체 광고
	브랜드,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행사		기획비용 100%	판촉물 구입비용 100%	계획 공고 → 가맹점 부담금 제시 → 가맹점 행사참여결정 → 시행 (비용지급 시기는 별도 통지)	지역 및 개별 행사

- ▶ 전국 및 지역별 광고 및 판촉을 위하여 가맹계약과 별도로 사전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광고 및 판촉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광고·판촉 비용의 소모적인 낭비를 줄이고 다른 가맹점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당사와 협의하여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계약서 제37조 손해배상

- ①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사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원을 가맹본부에 위약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본부는 위 금원과 별개로 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을 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일금삼천만원(₩30,000,000)
 2. 가맹점사업자가 경업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본 계약기간 또는 계약종료 후 1년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한 업종을 하는 경우 일금오천만원(₩50,000,000)
 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점 매입한 경우 위약금 일금일천만원(₩10,000,000)
-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가맹점운영권 양도 등으로 종료될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 또는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계약이행보증금과 상계하여 정산할 수 있으며 정산내역서를 교부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다.
- ⑤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 등의 귀책사유로 가맹본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⑥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본 계약의 이행이 천재지변, 전쟁, 내란, 정부의 규제, 노동쟁의 발생 등의 사유로 불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양

당사자는 계약의 이행 불능이나 지연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⑦ 제 42조 (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제 1항에 규정된 영업표지 등의 철거의무를 지체하거나 쿠마키친이나 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영업표시 보상금(지체일수 × 100,000원)을 가맹본부에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⑧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 계	-	70일 내외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70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10개점 현황 제공 및 상담	D-69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55~53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52	
가맹금 예치	- 국민은행 가맹금 예치	D-52~51(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45~42(4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42~35(8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35 ~ 6(3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17 ~ 4(14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1.상품에 따른 마케팅 방법 등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경영활성화 나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 한 경우 가맹점에 방문하거나 유 선상으로 관련된 지도를 할 수 있음	가맹본부 부담	문의: 당사 (1661 - 9084)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2.해당 지역의 특성과 시장동향 분석에 따른 개별 가맹점의 운영방안 지도 3.가맹점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발생 시 그 해결을 위한 경영지도	필요 시 가맹본부에 요청하고 가 맹본부는 경영지도를 위한 방법 및 일정을 안내하고 이를 귀하가 동의하면 진행함	가맹점 부담 (살비)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쿠마키친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및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	-	-	-	-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쿠마키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 한	비 고
최초 교육	회사 소개 조리 및 서빙 실습, 원부재료 관리 실습 POS 사용, 매장 운영기법 등	실습교육 /개별지도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메뉴 조리기술 전수 등	실습교육 /개별지도	수시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쿠마키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최초 교육	10일 (영업일 기준)	2,200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	1일	실비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이나 귀하나 귀하가 채용한 직원이 교육에 대한 이해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개점을 연기 또는 보류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을 귀하 또는 귀하가 채용한 직원이 2회 이상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와 교육 후에도 가맹점사업자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물품 공급 중단, 가맹계약 해지, 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직영점명	주소
1	경기	별내점	경기도 남양주시 두물로 27번길 23, 1층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약 6년 7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548,140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 (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1661 - 9084)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 ~ 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1 재무현황 및 손익계산서

별지 2 구입강제품목 및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별지 3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별지 4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별지 5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별지 6 가맹금예치금 예치신청서

별지 1 재무현황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지 2 구입강제품목 및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 아래 품목은 당사의 경영방침 및 물가변동 등의 사정에 따라 품목 및 가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거래상대방 강제 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거래상대방 권장 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지 3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로스카츠정식(130g)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2회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2회차 시정 요구한 날로부터 2개월 후에 계약해지	문의 1661-9084
로스카츠정식(200g)			
히레카츠정식(130g)			
히레카츠정식(200g)			
새우카츠정식			
모짜렐라카츠정식			
쿠마카츠정식			
쿠마소바세트			
버터볼카츠정식			
쿠마함박스테이크			
쿠마함박치즈스테이크			
네기카츠나베			
김치카츠나베			
로제카츠나베			
카레나베			
치즈카레나베			
마라카츠나베			
얼큰카츠나베			
우동 단품			
김치우동 단품			
얼큰우동 단품			
우동세트			
김치우동세트			
얼큰우동세트			
마라우동세트			
버터볼 마제소바			
소바세트			
소바 단품			
카츠동 단품			
김치 카츠동 단품			
카츠동 정식			
김치 카츠동 정식			
하프로스			
하프히레			
치즈카츠			
새우카츠			
버터볼카츠			
해쉬브라운			
가라아게			
미니소바			
미니우동			
미니우동(김치)			
미니우동(얼큰)			

별지 4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로스카츠정식(130g)	10,000 ~ 11,000	가맹점주 이메일 또는 서면 통보	2023.12월 기준
로스카츠정식(200g)	13,500 ~ 14,500		
히레카츠정식(130g)	11,000 ~ 12,000		
히레카츠정식(200g)	15,000 ~ 16,000		
새우카츠정식	11,000		
모짜렐라카츠정식	13,000		
쿠마카츠정식	15,000		
쿠마소바세트	15,000		
버터볼카츠정식	10,000		
쿠마함박스테이크	11,500		
쿠마함박치즈스테이크	13,000		
네기카츠나베	10,500		
김치카츠나베	11,500		
로제카츠나베	13,000		
카레나베	12,500		
치즈카레나베	13,500		
마라카츠나베	12,500		
얼큰카츠나베	11,500		
우동 단품	8,500		
김치우동 단품	9,500		
얼큰우동 단품	9,500		
우동세트	11,500		
김치우동세트	12,500		
얼큰우동세트	12,500		
마라우동세트	13,000		
버터볼 마제소바	12,000		
소바세트	12,500		
소바 단품	9,500		
카츠동 단품	10,000		
김치 카츠동 단품	11,000		
카츠동 정식	12,000		
김치 카츠동 정식	13,000		
하프로스	4,500		
하프히레	5,000		
치즈카츠	4,000		
새우카츠	3,500		
버터볼카츠	3,500		
해쉬브라운	1,500		
가라아게	3,500		
미니소바	4,500		
미니우동	4,500		
미니우동(김치)	5,000		
미니우동(얼큰)	5,000		
시즌별 출시 계절 메뉴	13,000 ~ 15,000		

별지 5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지 6 가맹금 예치금 예치신청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11. 19.>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9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